

우송정보대학 인권센터규정

제정 2022.10.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우송정보대학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 대학 구성원”이란 본 대학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위원회, 조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행정실 등을 둘 수 있다.

②센터에는 상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상담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실의 구성) ①인권상담실에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상담원은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상담실의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 이외의 인권침해행위와 고충민원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지원과 구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개선 등에 관한 지침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3.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실시
4. 인권침해행위, 고충민원,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5.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성평등상담실의 구성) ①성평등상담실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상담원은 성평등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성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상담실의 기능) 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지원과 구제

2. 성희롱 · 성폭력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3.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4.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5. 그 밖에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센터장, 교육혁신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교내 구성원 및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성평등상담실 운영 및 평가
3.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 · 성폭력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
4.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5. 예산과 결산
6.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조사심의위원회 구성) ①본 대학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조사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조사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구성하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13조(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여부의 결정 · 조정 ·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등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게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조치
4. 기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센터장, 상담원, 센터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와 구제

제16조(상담 및 신고) ①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 개시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

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당사자의 권리)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센터의 사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센터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8조(협력의무) 학내 학과 및 행정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내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 관한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